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3. 15.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3월 6일 박정자의원의 6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97.3.15)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박정자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파견하여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이미 '95.1월과 '96.11월 및 12월 부로 각 경찰서 파견 근무를 해제하고 복귀하여 각 과·동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평균 수명의 연장 추세로 대부분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일 뿐만 아니라 유사직종인 지방방호원, 청원경찰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이 우리구 공무원으로서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직명변경: 지방방범원 → 지방지도원
- 근무상한 연령: 53세 → 58세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 조례는 현행 제도상 <정부 조직법 제31조> 경찰(방범)업무는 국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까지 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게 소속 및 보수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근무는 경찰서에 파견되어 국가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방범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 공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미 '89. 2. 11. 방범원 결원시 충원금지를 조건으로 전원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고, 더구나 '96. 12월까지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8세부터 61세까지이고 유사직종인 지방방호원 및 청원경찰등과의 형평성과 국민평균 수명의 연장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일리가 있기는 하나, 방범원은 임용 당시 정년이 53세 이었고 향후 정년이 연장되는 5년간의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구의 인력형편 및 인력관리 측면이나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방범원은 임용당시 정년이 53세 이었고, 향후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지방비 부담등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근무상한 연령 : 58세 → 53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종구분	1 종	경노무
직명	지도원	사환
근무상한연령	53세	23세

5. 審査結果 : 수정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7. 3. 15
제안자 : 배기한위원외1인

의안 번호	관련 119호
----------	------------

1. 수정이유

- 방범원은 임용당시 정년이 53세이었고 향후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근무상한 연령 : 58세 → 53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9	발의년월일 : 1997년 3월 6일 발 의 자 : 박정자의원의 6인
------------	-----	--

1.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파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치안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중 일부인원(62명)은 이미 '95.1.5부터 교통지도과에 파견하여 버스전용차선 지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92명)도 '96.11.15과 12.1자로 각 경찰서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복귀하여 각 과·동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평균 수명의 연장 추세로 대부분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 일뿐만 아니라 유사직종인 지방방호원, 청원경찰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이 우리구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명변경 : 지방방범원 → 지방지도원
- 근무상한연령 연장 : 53세 → 58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및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3조 및 제6조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내무부1996.4.5)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종구분	1 종	경노무
직명	지도원	사환
근무상한연령	58세	23세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 ~ 제12조 (생략)</p> <p><별 표></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fit-content;">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 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 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경노무</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근무상한 연 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방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53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 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3세</td> </tr> </tbody> </table> <p>비고 : 방법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 연 령	방법원			53세			사 환	23세	<p>제5조(삭제)</p> <p>제5조 ~ 제11조 (제6조 내지 제12조와 같음)</p> <p><별 표></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fit-content;">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직 종 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 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경 노 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직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지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 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근무상한연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58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3세</td> </tr> </tbody> </table> <p>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직 종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23세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 연 령																			
방법원			53세																			
		사 환	23세																			
직 종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23세																				